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 정관

1949.8.9 제정 1979. 2.26 개정 1997. 2.28 개정 1980. 2.27 개정 1998. 3.13 개정 1964. 3 .10 개정 1981. 2.26 개정 1999. 3.12 개정 1964. 4 .15 개정 2000.3.17 개정 1982. 2.26 개정 1964. 5 .10 개정 1964.7.5 개정 1983. 5.27 개정 2002. 3.15 개정 1968.2.1 개정 1984. 5.29 개정 2003. 3.14 개정 1968.6.3 개정 1985. 5.28 개정 2008.3.14 개정 1969.11.01 개정 1986. 5.29 개정 2011. 3.18 개정 1969.11.25 개정 1987. 5.28 개정 2012. 3.16 개정 1970. 6. 12 개정 1988.6.09 개정 2013. 1.28 개정 1972. 2. 28 개정 1989. 5.26 개정 2013. 3.15 개정 1974. 2.25 개정 1990. 2.27 개정 2018. 3.27 개정 1991. 2.27 개정 1975. 2.24 개정 2019. 3.29 개정 1976. 2.26 개정 1991. 6.19 개정 2021. 3.29 개정 2022. 3.29 개정 1977. 2.25 개정 1992. 2.27 개정 1978. 2.27 개정 1996. 2.29 개정

제1장 총 칙

제 1조(상호) 이 회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영문 Dong-A Socio Holdings Co.,Ltd.)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경영 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 3.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 5.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 6. 주차장 운영업
- 7.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 8.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업
- 9. 의약품소분업
- 10. 연구, 개발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 등의 제공업 및 관련 용역 수탁업
- 11. 한약재 수출입 및 판매업
- 12.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제조, 수입, 임대, 수리 및 판매업
- 13. 식료품, 식품첨가물, 인삼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
- 14. 화장품, 세제, 세정제, 비누, 도료, 프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
- 15. 효소의 제조 및 매매업
- 16.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 17. 수입품의 판매 및 위탁업
- 18.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 19. 전산용역 및 임대업

- 20. 조림, 육림 및 약초재배업(앵속제외)
- 21. 창고업 및 자동차 운수사업
- 22. 기계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 및 매매업
- 23. 의약품가공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임대업
- 24. 교육 서어비스업 및 대행용역사업
- 25. 금형 및 기타장치 제조 및 매매업
- 26. Engineering 용역업
- 27. 주류 수출입 중개업
- 28. 통신판매업
- 29. 자가측정 대행업
- 30.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31. 단미사료제조업
- 32. 주택의 건설, 공급, 판매 및 그 시공업
- 33. 조립식 주택사업
- 34.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
- 35. 아파트형 공장건설, 분양 및 임대업
- 36. 택지, 공장부지 조성 및 공급업
- 37. 상가, 업무용 시설의 건설, 공급, 판매 및 그 시공업
- 38.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
- 39.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 사업
- 40. 전각호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 제 3 조(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공장과 지점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공고방법) ①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onga.co.kr)에 게재한다.
 - ②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 식

제 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 7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삼백만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본항 개정 2021.03.29>
- 제 7조의 3(상환주식) ① 회사는 제 7조의 2에 따른 우선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또는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제 7 조의 2 제 7 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상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 또는 상환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 제 7 조의 4(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 7 조의 2 에 따른 우선주식을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전환청구 기간은 제 7 조의 2 제 7 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⑤ (삭제) <2021.03.29>
- 제 7 조의 5(상환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 7 조의 3 제 2 항 내지 제 5 항 및 제 7 조의 4 제 2 항 내지 제 4 항을 준용한다. <본항 개정 2021.03.29>
-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실물로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의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소정의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또는 공정거래법 소정의 자회사(이하 본 호에서 "자회사")를 추가하는 등 지주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소정의 자회사 포함) 또는 다른 회사의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당해회사의 발행주식(지분 포함), 주식관련증권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을 현물출자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 2 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9 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9 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해당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삭제) <2021.03.29>
 -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9 조의 3(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제외한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 우리사주조합과 이 회사간 체결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10 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본조 개정 2021.03.29>
-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하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업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 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본항 개정 2021.03.29>
- 제 12 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본조 개정 2021.03.29>
- 제 13 조(기준일) ① (삭제) <2021.03.29>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21.03.29>

제3장 사 채

- 제 14 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4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 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전환가액은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본항 개정 2021.03.29>
-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 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삭제) <2021.03.29>
- 제 15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개정 2021.03.29>
- 제 16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 제 17 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8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 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34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9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2.03.29>
- 제 20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34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2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3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24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25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 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6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7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27 조의 2(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 처분 등)① 회사는 2013 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이하 본 조에서 "물적분할 자회사"한다)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영업양도(상법 제 374 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승인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물적분할 자회사 의 주주로서 행사할 의결권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 28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 제 29 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 ② (삭제) <2018.03.27>
- 제 30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1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삭제) <2018.03.27>
 -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 32 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 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33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 약간 명의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 34 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의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통할한다.
 -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회사의 일상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4 조의 3(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5 조(삭제) <2018.03.27>
- 제 36 조(삭제) <2018.03.27>
- 제 37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22.03.29>
 - ③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④ (삭제) <2018.03.27>
- 제 38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39 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39 조의 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투자자문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평가보상위원회
 - 4. 감사위원회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7조, 제 38조 및 제 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9 조의 3(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선임한다.
 - ⑤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정관 제 27 조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본항 신설 2022.03.29>
- 제 40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41 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상담역 또는 고문을 약간명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 42 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43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 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3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 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 44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 45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 46 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③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조, 제 11조, 제 12조, 제 15조의 2 및 제 16조의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19.03.29>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21.03.29>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2 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22.03.29>
- 2.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제 14 조의 2 제 1 항 및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각 발행한도는 2022 년 3 월 29 일 이후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부칙 신설 2022.03.29>